#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2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어기구 · 박희승 · 송옥주

이개호 · 오세희 · 허성무

안호영 · 주철현 · 임호선

박 정・소병훈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함.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 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5조).

- 나. 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 지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 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 돈농가 스스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한돈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 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

- 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 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 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사 관련 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 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 또는 과소생산이 예측되어 한돈 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또는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돈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자.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 타.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수출 전문인력양성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돼지를 국내에서 생산 한 것을 말한다.
- 2. "한돈농가"란 제1호의 한돈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 3. "한돈산업"이란 한돈의 생산·사육·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 등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한돈산업관계자"란 제3호에 따른 한돈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한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한돈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한돈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종합시책을 기초로 하여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돈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돈농가에 대한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축사 등이 운영되는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축사 운영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한돈산업이 육성·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육성 등의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 돈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돈산업의 현황과 전망
- 2.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3.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 · 융자 계획
- 4. 한돈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방안
-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한돈농가의 부담 완화 방안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건강하고 안전한 한돈 생산을 위한 품질 향상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종돈의 개량 및 보호 방안
- 8. 한돈의 유통 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 9. 한돈 가격 안정화 및 수급관리 방안
- 10. 한돈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 11. 한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ㆍ기술 개발 지원 방안
- 12. 한돈의 위생관리 및 한돈 분뇨 처리 고도화에 대한 지원 방안
- 13. 한돈농가의 재산권 보장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의 균형을 위한 방안
- 14. 그 밖에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 사육 두수, 생산량 및소비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와 한돈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3.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한돈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품질향상 및 사료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6.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7. 한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2. (사)대한한돈협회가 추천하는 자
- 3. 한돈 관련 학계 전문가
-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돈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
-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 6. 소비자 단체 대표
- 7. 한우농가 대표
- 8. 한돈 관련 수출・입 업체 대표
- 9. 한돈 유통관련 전문가
- 10. 그 밖에 한돈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구·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 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범위·추진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하여야 한다.
  - 1. 한돈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 2. 한돈의 가축질병 예방 및 위생에 대한 교육
  - 3. 한돈의 탄소중립 등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 4. 한돈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 5. 그밖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를 위한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양성기 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한돈산업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등

- 제11조(수입안정보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 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 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한돈 수입안정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보험가입자의 기준, 보험료율의 산정, 보험모집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 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규모 및 일정소득 이하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이하 "후계한돈인"이라 한다)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청년한돈인"이라 한다)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한돈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착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한돈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계열학교·축산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한돈산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업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한돈산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임대, 축사시설 구입 및 신축·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특례 보증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년 한돈인이 한돈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체

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 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축사 관련 시설 · 기자재 등 관련 시설 설치 사업
  - 2. 스마트 축사 신축 · 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 3.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경영안정 사업
  - 4. 한돈가격 및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사업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한돈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경영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①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 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1.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한돈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한돈의 수급상황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한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그 밖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돈 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 및 과소 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의한돈의 생산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 ① 국가는 한돈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한돈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한돈의 가격이 제1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간 자기부담으로 한돈을 비축할 시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시장격리 및 비축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도축·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농가가 한돈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대상·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한돈 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부산물(이하 "한돈부산물"이 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 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기금의 재원 및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용도 또는 지원기준,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사료작물 재배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곡물 자급율 확보 및 한돈농가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관한 지급기준 등의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한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등

- 제21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돈 개량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1. 한돈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 2. 한돈 품질고급화 추진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 3. 한돈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제22조(도축·가공시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의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의 개선·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 품질고급화 향상에 필요한 도축· 가공시설 등에 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3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 반 확대를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한돈 소비촉진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축산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①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 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개선 경영실천, 탄소 중립 실천,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의 탄소저감 실천을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사 환경 개선에 필요한 스마트 축사 및 정보통신기술 장비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축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가축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①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 자는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 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정보·인력 교류, 대외 홍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국제협력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양성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